2021년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공개문

영 동 군

- 2021년도 감사원 대행감사 -

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

《 감사내용 》

- 감사기간
  - 2021. 9 ~ 10월중
- 감사범위
  - 2014. 7. 15. ~ 2021. 7.[분야별 상이]
- 감 사 반 : 기획감사관 외 5명
- 감사중점 : 5대 중점분야
  -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
  -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부적정
  -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
  -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
  - 개발부담금부과 부적정

《 감사결과 》

- 총 지적건수 : 5건
- 조치계획
  - 행정상 조치 : 주의 5건
  - 재정상 조치 : 해당없음
  - 신분상 조치 : 해당없음

《 수범사례 》

- 체계적인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업무 지침서 제작·배부
  - 법과 지침에 소송비용회수에 대한 자세한 업무 처리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소송비용회수가 어려워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그 동안의 노하우를 근거하여 매뉴얼화(化)

붙임 1. 주요지적사항 1부.
2. 감사결과 처분서 5부. 끝.

주요 지적사항

연번	부서명	지 적 사 항	처분(안)		
			행정상	신분상	금액
총계		총5건	주의 5		
1	재무과	◦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(발주부서 제안업체 추천 건 분할구매)	주의		
2	환경과	◦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(쓰레기 봉투 분할구매)	주의		
3	산림과	◦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(목재파쇄기 분할구매)	주의		
4	건설교통과	◦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(버스승강장. 가로등자동점멸기 분할구매)	주의		
5	상수도사업소	◦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(밸브실, 수도미터 분할구매)	주의		

【 일련번호 : 1 】

감사결과 처분서

【행정상 조치】 주의

【재정상 조치】 없음

【신분상 조치】 없음

【제 목】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

【현 황】

○ 다수공급자계약물품 분할구매 내역

[단위:천원]

품명 (세부물품분류번호)	건명	납품요구일	업체명	금액	제안업체 추천여부	2단계경쟁 실시 여부	비고
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(3013151401)	계산2 자연재해위험개 선지구 정비사업 조립식PC암거(2. 0x1.0) 구입	20.06.02.	-	178,905	여	여	안전 관리과
	계산2 자연재해위험개 선지구 정비사업 조립식PC암거(1. 5x1.0) 구입	20.06.02.	-	36,303	여	부	

【위법부당사항】

○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선택(이하 ‘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’ 이라 한다)해야 함.

○ 그리고「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」(조달청고시)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금액(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·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.)이 1억원 이상(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) 또는 5천만원 이상(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)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(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)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.

○ 아울러, 같은 기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금액을 위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됨.

○ 그럼에도. 재무과에서는 [현황]과 같이 안전관리과에서 2단계경쟁 제안업체를 추천하여 구매요청한 계산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(동일 세부물품분류번호)에 대해 물품식별번호(규격)로 구분하여 1억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2단계 경쟁을 실시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미실시 구매한 사실이 있음.

【처분내용】

○ 재무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.

【 일련번호 : 2 】

감사결과 처분서

【행정상 조치】 주의

【재정상 조치】 없음

【신분상 조치】 없음

【제 목】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

【현 황】

○ 다수공급자계약물품 분할구매 내역

[단위:천원]

품명 (세부물품분류번호)	건명	납품요구일	업체명	금액	합계금액	비고
쓰레기봉투 (4712170101)	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구입	20.02.24.	-	62,660	100,620	2020
	2020년도 하반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구매	20.07.24.	-	37,960		
쓰레기봉투 (4712170101)	2021년도 상반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매	21.01.20.	-	86,300	128,711	2021
	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	21.03.23.	-	19,111		
	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	21.04.15.	-	13,400		
	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	21.07.02.	-	9,900		

【위법부당사항】

○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

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선택(이하 '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' 이라 한다)해야 함.

○ 그리고「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」(조달청 고시)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금액(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·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.)이 1억원 이상(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) 또는 5천만원 이상(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)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(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)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.

○ 아울러, 같은 기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금액을 위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됨.

○ 그럼에도. 환경과에서는 [현황]과 같이 2단계 경쟁대상인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들을 고시 금액 이하로 분할하여 납품요구 하였고, 그 결과 예산 절감 기회를 놓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【처분내용】

○ 환경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.

【 일련번호 : 3 】

감사결과 처분서

【행정상 조치】 주의

【재정상 조치】 없음

【신분상 조치】 없음

【제 목】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

【현 황】

○ 다수공급자계약물품 분할구매 내역

[단위:천원]

품명 (세부물품분류번호)	건명	납품요구일	업체명	금액	합계금액	비고
목재파쇄기 (2110170601)	이동식 파쇄기 구입	20.03.18.	-	78,900	108,400	
	목재파쇄기 구입	20.06.11.	-	29,500		

【위법부당사항】

○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선택(이하 ‘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’ 이라 한다)해야 함.

○ 그리고 「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」(조달청고시)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금액(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·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

다.)이 1억원 이상(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) 또는 5천만원 이상(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)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(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)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.

○ 아울러, 같은 기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금액을 위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됨.

○ 그럼에도. 산림과에서는 [현황]과 같이 2단계 경쟁대상인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들을 고시 금액 이하로 분할하여 납품요구 하였고, 그 결과 예산 절감 기회를 놓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【처분내용】

○ 산림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.

【 일련번호 : 4 】

감사결과 처분서

【행정상 조치】 주의

【재정상 조치】 없음

【신분상 조치】 없음

【제　　목】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

【현　　황】

○ 다수공급자계약물품 분할구매 내역

[단위:천원]

품명 (세부물품분류번호)	건명	납품요구일	업체명	금액	합계금액	비고
버스승강장 (3022200301)	읍면 버스승강장 구입	19.04.23.	-	39,435	302,555	
			-	55,566		
	부용2리, 산막리 버스승강장 구입	19.05.22.	-	22,080		
	읍면 버스승강장(2차) 구입	19.07.18.	-	79,380		
			-	59,840		
	봉곡리(턱골) 버스승강장 구입	19.08.12.	-	7,938		
	읍면 버스승강장(3차) 구입	19.10.04.	-	15,876		
			-	22,440		
버스승강장 (3022200301)	읍면 버스승강장 구입	20.06.04.	-	23,661	122,413	
			-	31,752		
			-	22,200		
	영동 검찰청 앞 버스승강장 구입	20.06.17.	-	6,300		
	용산면 구촌리 381-1 외 4개소 버스승강장 구입	20.11.17.	-	38,500		
가로등자동점멸기 (3912110701)	영동군 가로등 양방향제어이스템 구축사업(1권역) 관급자재 구입	20.04.17.	-	64,862	100,708	
	영동군 가로등 양방향제어이스템 구축사업(2권역) 관급자재 구입	20.05.18.	-	46,046		

【위법부당사항】

○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선택(이하 ‘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’ 이라 한다)해야 함.

○ 그리고 「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」(조달청고시)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금액(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·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.)이 1억원 이상(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) 또는 5천만원 이상(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)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(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)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.

○ 아울러, 같은 기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금액을 위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됨.

○ 그럼에도. 건설교통과에서는 [현황]과 같이 2단계 경쟁대상인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들을 고시 금액 이하로 분할하여 납품요구 하였고, 그 결과 예산 절감 기회를 놓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【처분내용】

○ 건설교통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.

【 일련번호 : 5 】

감사결과 처분서

【행정상 조치】 주의

【재정상 조치】 없음

【신분상 조치】 없음

【제 목】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

【현 황】

○ 다수공급자계약물품 분할구매 내역

[단위:천원]

품명 (세부물품분류번호)	건명	납품요구일	업체명	금액	합계금액	비고
밸브실 (4014179501)	학산양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관급자재	19.07.22.	-	30,100	104,579	
			-	31,930		
			-	42,549		
수도미터 (4111250401)	지방상수도 스마트검침사업 수도미터기 관급자재 구입	21.06.18.	-	65,046	130,092	
			-	65,045		

【위법부당사항】

○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선택(이하 ‘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’ 이라 한다)해야 함.

○ 그리고「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」(조달청고시)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금액(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·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.)이 1억원 이상(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) 또는 5천만원 이상(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)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(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)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.

○ 아울러, 같은 기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금액을 위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됨.

○ 그럼에도. 상수도사업소에서는 [현황]과 같이 2단계 경쟁대상인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들을 고시 금액 이하로 분할하여 납품요구 하였고, 그 결과 예산 절감 기회를 놓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【처분내용】

○ 상수도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.